

희년의 윤리

신 득 일
(교수, 구약학)

1. 이끄는 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정부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모토아래 갖가지 세금을 부과하여 땅을 가진 자에게는 '고통'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교회 일각에서는 성경이 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생각해왔다. 이 때 토지와 관련된 성경적인 규정으로서 구약의 희년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희년제도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토지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구약의 희년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하고, 이 제도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일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구약의 희년제도가 우리 시대에 주는 윤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2. 서론적 고찰

2. 1. 희년의 용어

구약에는 희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그 말은 단지 외치다는 말(jubilare, jubilum)에 근거한 희년의 해(annus jubilaeus)에서 나왔다. 일찌기 jubilum은 농부과 목자들의 “유-”라는 외침에서 나왔고, 요엘(요엘)은 혼합된 말이다.¹⁾ 동사 jbl에 대한 유래로서 히브리어 수양(수양, 수 6 : 5, 출 19 : 13)에 해당하는 어원은 아캇어 jabilu(뿔없는 수양) 일 가능성에 있다고 한다.²⁾ 그러나 희년에 해당하는 용어 '요엘'의 어원은 확실치 않다. 전통적으로 “수양”이라고 하지만 이 말을 어원 ybl(가져가다)과 비교하는 이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jubilare(외치다)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출애굽기 19 : 13에는 '요엘'이 악기로 나타나 있는데 어 호수아 6 : 5의 '요엘' 같은 악기다.³⁾ 희년은 그 이름에 있어서 속죄일에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악기 이름과 관련된 것 같다. 물론 이날에 부는 악기는 '요엘'이 아니라 '트럼펫' (레 25 : 9)이지만 말이다.

이 '요엘' 외에도 희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도 있다. 'שָׁנַת הַמִּלְאָקֶה' (오십 년 째, 레 25 : 10, 11), 'שָׁנַת הַזְּבֹרֶךְ' (되돌리는 해, 갤 46 : 17), 'שָׁנַת רְצֹן' (은혜의 해, 사 61 : 2) 그리고 'שָׁנַת הַשְׁמִיטָה' (면제년, 신 15 : 1, 31 : 10)이 있다.

2. 2. 희년의 날짜

레위기 25장과 27 : 16~25은 희년의 해(요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해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람비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레위기 25 : 8, 10에서 희년은 49년 안식년 다음 해라고 주장한다.⁴⁾ 그렇게 되면 안식년과 희년 2년 동안 땅을 묵히게 된다는 말이다. R. 드보는 50년이란 주기를 가나안 원주민의 농사월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 두 해 동안 땅을 쉬게 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⁵⁾ 성경은 희년이 선포되는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레 25 : 9, 10)”.

여기서 말하는 제 오십년은 사십 구년이 지난 다음 해라기 보다는 안식년과 같은 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 삼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할 때 실제 날수는 이를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오십 년째”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⁶⁾ 그래서 일곱 번째 안식년을 중반부터 희년과 겹쳐서 지켜야 했을 것이다. 칠월 십일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안식년에 시작되는 것은 칠일, 칠년, 일곱 번의 칠년과 같이 7이란 숫자와 관련된 것 같다. 그러나 그 날짜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

여기에서 반대해서 Maarsingh은 레위기 25 : 21, 22에서 제 여섯 해에 나는 “삼년 쓸 소출”에 근거하여 희년이 안식년 다음이라고 주장한다.⁷⁾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22절에 “제 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란 말과 11절의 희년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이 상충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2. 3. 안식일, 안식년과의 관계

사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에 근거하여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출 20 : 8~11). 이 안식의 근거는 계시가 발전하면서 다르게도 나타난다. 즉 출애굽이 안식의 근거가 된다(신 5 : 12~15).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근거해서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 내용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레 19:30)고 명하신다.

안식년 대해서는 출애굽기 23:10, 11과 레위기 25:1~7; 25:18~22 그리고 신명기 15:1~11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첫 규정은 땅이 쉬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산물을 나누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 규례는 주인이 종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세째 부분은 채무자들의 면제를 명하고 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이 쉬는 것과 더불어 땅의 휴식을 통하여 이웃과 나누고, 채무자에 대한 면제로 인하여 형제가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았다. 여기에 해방의 정신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희년의 규례에서 명하는 안식과 면제에 대한 조항은 안식일과 안식년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다. 또한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의 규정이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다(18~22). 희년법에 나타난 토지와 가옥의 반환이나 무이자 규정과 종의 해방은 앞의 두 규례의 연장이며 그와 정신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희년제도

구약 성경에서 희년은 유일한 것인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규례이다. 오직 레위기에만 명시되어 있다. 이 책에서만 우리는 희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외에 이와 일치하는 규정을 찾으려면 좀 멀기는 하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년과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내린 misjarum칙령 사이에는 꽤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이다.¹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왕이 칙령을 내려 약자를 보호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전혀 왕이 필요치 않고 다만 레위기 25장 서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를 시행토록 한다. 희년은 사람의 임의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것이다. 희년법이 misjarum에서 말하는 면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바벨론의 법은 뜻밖의 갑작스런 일이고, 하나님의 희년 규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희년은 독특한 이스라엘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만 희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관한 규정을 내용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1. 희년의 주제 (8~12)

이 부분은 처음으로 희년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는 본문이다. 앞 부분의 안식년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그 나름대로 특유한 성격을 가진 절기를 명하고 있다.

희년이 시작되는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제 오십 년 칠월십일 속죄일 나팔을 불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날에 시작함으로써 안식년과 같이 희년도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때는 가을로서 일년 중 중간이지만 고대 신년과 관계가 있다.¹¹⁾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경고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을 소환하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중대한 일인 때문이다.¹²⁾

희년의 대주제는 “자유”이다. 이 자유란 말은 ㄱְּרָאַרְעָא로 쓰였다(사 61:1; 렘 34:8, 15, 17에도 나옴). 이 말은 아캇어 andruaru, duraru(dararu, 마음대로 가다, 도망하다, 자유롭게 되다)에서 파생되었는데 아캇어로는 “침을 벗은 상태”를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해방을 뜻한다.¹³⁾

이 아캇어와 관련해서 Gordon은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제도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누지에서 발견된 아캇어 토편에는 suduti와 an-du-ra-ri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는 후자를 ㄱְּרָאַרְעָא와 동의어로 보고 전자는 안식년과 관련시켜 설명한다.¹⁴⁾ 그러나 이 비교는 확실치 않다. 우리는 이 두 제도가 칠년, 그리고 오십년 만에 한번씩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누지문서에 안식년과 희년을 닮은 것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용어가 말해주듯이 희년의 특징은 해방과 본래대로 상환(restitutio ad integrum)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기 기업과 가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10). 이것은 팔지 않으면 안되었던 땅으로 돌아 오고, 종된 자가 자기 가족에게 돌아 오는 것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야웨께서 생활 수단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 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소유와 삶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3. 2. 매매규정 (13~23)

이 단락의 출발점은 희년에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מִתְּנָאַת)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땅에 관련된 것이다. 14~17절은 땅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 나올 수확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는 그 토지에서 희년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한다. 이는 그 때에 그 땅

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는 사람은 동족(동족)이 토지나 그 소유를 팔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오용해서는 안된다. 14절의 **↳**는 **↳**의 하필형 금지법으로 억압하지(bedrücken)말라¹⁴⁾는 뜻인데 여기 매매하는 상황에서는 속이지(übergroßen)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물건의 값을 터무니 없이 올려서 요구하거나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물론 그런 행동의 결과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도망한 종 그리고 어려운 처지를 당해 무엇을 파는 형제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막으시고, 동시에 몇몇 사람들이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신다. 이런 토지매매에 대한 규정의 배후에는 중요한 종교적인 동기가 있다. 땅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다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니라”(23).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사기 위해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¹⁵⁾. 그들은 이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으로서 그 땅을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아무도 그 땅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땅은 기업으로 남아있다. 이스라엘도 나그네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특별한 관계가 나온다. 그러나 백성과 땅의 관계는 오직 여호와와 그 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¹⁶⁾

3. 속전(24~34)

여호와께서는 두 희년 사이의 기간에도 백성 중에 가난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례를 세우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았다면, 친척 중에서 누가 그 판 것을 다시 사서 무를 수 있다. 이것은 속전(속전)이라고 한다. 그 것은 토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가옥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롯기에서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속전하는 자(**↳**)의 권리ς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일 성안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일년 안에 무를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무를 수 없고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년제도는 성벽이 없는 촌락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레위인의 가옥은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희년에도 판 가옥을 돌려 보내도록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기 때문이다(민 35:1~8; 수 21:1~42).

이 속전의 원리도 23절의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3. 4. 이자규정(35~38)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동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는 원래 여자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방세계에서는 자주 높은 이자가 적용되었다.¹⁷⁾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자금지를 명하셨다. 돈 때문에 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가난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치 않았으셨다. 백성들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형제 사랑하기를 배워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셨다(38). 이 이스라엘의 법은 사랑의 원리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물론 이자 받는 것이 비합법적이라는 말은 아니다.¹⁸⁾

3. 5. 노예해방(39~55)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빚 때문에 자신이 종으로 팔리게 될 경우에 그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종이 되도록 하자는 않으셨기 때문이다. 동족을 엄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우를 받도록 하셨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종인 처지에 다른 형제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방인은 영원한 종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유한 이방인의 집에 팔리면 그를 소유물과 같이 속할 수 있다. 여기서 고엘은 가까운 가족이 되는데 이는 결원이 생긴 가족을 보충하는 이스라엘 가족의 법적 관계를 보여준다.¹⁹⁾ 돈이 없어서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풀려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 법은 이스라엘 전체가 특별한 여호와의 “종”이요, 그 자체가 탈취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끝난다(55). 이것은 이 사회법을 지배하는 종교적 사상이다. 이스라엘 제사법이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것처럼 말이다.²⁰⁾ 그러니까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25:17, 36).

4. 환상인가? 실제인가?

4. 1. 이스라엘 사회의 이상으로서의 희년

희년의 공식적 표현은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며”(10b) 그리고 “너희는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

업을 회복하리라”(41b)이다.

이스라엘은 각자의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나는 산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을 사회적,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태평세월에 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왕상 4:25). 또 악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이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왕하 18:32). 미가는 구원의 때를 말하면서 희년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4:4). 스가랴가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했다(3:10).

위의 구절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가진 이상적인 사회적 표준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희년의 원리가 잘 적용된 사회이다.²¹⁾

4. 2. 이스라엘이 지킨 희년제도

R. 드보는 이스라엘의 희년제도를 유토피아적 환상으로 본다.²²⁾ A. Jirkو도 “이 법을 통해서도 몇몇 개인이 토지를 엄청나게 축재하는 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설교가 별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한다.²³⁾ 그렇다고 이 제도를 포로 이후에 첨가한 이상적 제도라고 해서는 안된다. B. Balschreit와 W. Eichrodt²⁴⁾와 같이 희년이 후대의 공상적 산물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다른 희년의 의미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자본주의 체제외에 다른 경제체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⁵⁾

성경에 종종 희년이 무시되고(대하 36:2~21) 구체적으로 희년을 완전히 실행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몇몇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이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래위기 27:16~25과 민수기 36:1~4에 희년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기에 희년법은 고대로부터 존재했고, 민수기 기사는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6~15의 내용도 이스라엘이 포로이전에 이미 희년을 지켰음을 보여준다.²⁶⁾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희년이 시행되었다는 증거를 주고 있다(렘 34; 느 5; 갤 7:13).

5. 희년 윤리의 현대적 적용

이스라엘의 희년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것은 희년법의 내용을 여자적으로 연장시켜서 적용하는 것과 완전히 단절시켜서 보는 견해이다.

5. 1. 직접 연관성을 취하는 입장

이 견해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적용이 나타나는데 우선적으로 좀 과격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희년이 시민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지난 때문에 재산과 자유를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근거하여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윤리에 희년이 주는 정신, 즉 평등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원한 식민주의를 배제하고, 억압받는 자와 기존체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적 해석에 의한 것인데 해방신학적, 민중신학적 해석과 관계가 있다. 또, 희년을 이사야 61:1, 2 및 누가복음 4:16~21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개인에 따라 강조점은 있으나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Van Selms, Andre Trocome, Yoder, 문희석 등이다.²⁷⁾

이와는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도 희년제도가 토지제도에 대해서 제공하는 원리가 있다고 보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이 대두되면서 상당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견해는 Henry Georgy의 토지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경적 기초를 희년에서 찾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이들은 대천덕, 김진홍, 허성구 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데 오늘도 그 법을 따라 살면 토지문제로 인한 경제-사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구약의 희년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토지와 관련된 경제 체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지의 지가와 가치 상승률에 따른 사회의 기회균등의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²⁸⁾

특히 유럽에서는 일찌기 Balscheit와 Eichrodt가 희년 제도의 규정을 포함한 재산에 관한 모세의 법이 모든 시대에 단순히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런 시각에서 국가와 교회, 사회 전반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규정과 그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자의 요구도 사회적인 것으로 보았다.²⁹⁾ 이 때 희년과 같은 모세의 율법은 무산계급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그런 계층이 있었음을 전체, 증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과격하든지 온건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희년제도에서 말하는 토지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희년법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

고, 그들의 땅은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백성과 뒤섞여 있기에 구약의 희년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제원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2. 예표적인 의미로 보는 입장

이 입장은 예표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견해를 결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년제도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의 제도개혁에 적용될 수는 없고 그 법의 목적이 해방과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궁극적인 의미만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카일과 멜리취에 의하면, “희년의 주된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든 것의 회복이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을 복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참다운 자유를 세우는 것이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탄식하게 되는(롬 8:19f) 헛된 굴레로 부터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모든 택한 백성을 창세 이전부터 그들의 유업으로 예비된 평화의 나라와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한다”(마 25:34; 골 1:12; 베전 1:4)고 한다.³⁰⁾ 특별히 희년은 속죄일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서 성취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자유의 나라를 고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희년제도가 실현된 일이 없고, 완전한 실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종말론적 대망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하에서는 윤리적 의미는 사라지고 속죄의 의미만 남는다. 물론 예수께서 희년을 성취하신 분이시기에(눅 4:14~21) 그 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희년법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희년제도는 더 이상 윤리적인 의미가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5. 3. 남은 윤리적 요소

이 문제에 대하여 Maarsingh은 위의 두 견해를 종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그는 희년법이 사회 개혁의 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을 뜻한다고 한다.³¹⁾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구약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여기서도 적용해 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나 율법을 이 시대에 그대로 연장시켜서 적용해야 할 것과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니까 구약의 희년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시민법이다. 그

것은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하기 위함이다. 모든 시민법이 그렇듯이 원칙적으로 희년법도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될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땅은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과 다르다. 약속을 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은 이스라엘의 사회-경제법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다.³²⁾

희년의 제도는 이 시대의 사회개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백성에게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된 것이다. 즉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등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과 재산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즉 연속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희년법이 가지는 정신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법에 적용되는 것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즉 부정한 식물에 관한 법이 우리 시대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야 하듯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요구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자에 대한 규정도 교인들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끼니를 이어가기 힘든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거기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희년법은 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과 보호를 요구한다. 이것이 윤리적 규범이 된다. 그렇지만 이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과 그 양상은 시대마다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6. 맺는 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희년에 대한 규정은 계시역사의 진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럴 때 해석상 야기되는 많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년은 사회개혁의 원리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회법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인 법이다. 그것은 선택 받은 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 법의 완전한 성취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와 해방을 고대했고, 종말을 사는 우리는 그 해방의 즐거움을 맞본다.

거기다가 희년법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는 윤리적인 규범은 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 때 사랑이란 정의와 공평한 균형을 이룬 상

태를 말한다. **코리실할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둘 배를 거둘 것이다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맛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 유품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 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군사선 구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오십년을 거룩하기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자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년을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괴롭하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나니 너희가 소신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자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넌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한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여너라 너희는 내 밖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울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울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산지로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유년에 내 복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땅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도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기 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부르기를 허락한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업무를 판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둘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다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모에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은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번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판았으면 판지 만 일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둘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번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다 희년에 둘려 보내기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둘려 보낼지니 대체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둘의 사면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판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5:1~34

〈참고도서〉

- 대천덕, 토지와 자유, 서울 : 무실 1992.
- 드 보, R.,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1.
- 앙드레 트로그메, 예수와 비폭력 혁명, 박혜련, 박명수 공역, 서울 :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 허성구, 성서에 나타난 희년사상, 서울 :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 Balschheit, B. und W. Eichrodt, Die sozial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für die Gegenwart, Basel : Friedrich Reinhardt, ND.
- Baumgäther, W.(ed.), Hebräisches und Aräma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 Leiden : Brill, 1967.
- Birch, Bruce C., Let Justice Roll Down,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Gispen, W. H., Bijbelsche archaeologie in : Bijbelsch Handboek, I, Kampen : J. H. Kok, 1935.
- Gispen, W. H., Leviticus, COT, Kampen : J. H. Kok, 1950.
- Gordon, Cyrus H., Parallèles Nouziens aux lois et coutumes de l'Ancien Testament, RB 44, 1935.
- Grundmann, H., Jubel : FS Jost, Trier 1954.
- Hoffner, Harry A., Jbl :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I, 1982.
- Hulst, A. R. en C. van Leeuwen, Bevrijding in het Oude Testament, Kampen : Kok 1981.
- Jirku, A., Das Israelitische Jobeljahr, in : Von Jerusalem nach Ugarit, Graz, 1966.
- Keil, C. F.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I, translated by James Martin,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983.
- Kraus, F. R., Ein Edikt des Königs Ammi-Saduqa von Babylon, Leiden 1958.
- Kutsch, E und R. North, Jobel, Th WAT III, 1982.
- Lewy, J., The Biblical institution of d'ror in the Lingt of Akkadian Documents, in : Eretz Israel V, 1958, pp. 21ff.

- Maarsingh, B., Leviticus, POT, Nijkerk : Callenbach, 1974.
- Maarsingh, B., Maatschappijcritiek in het Oude Testament : Het Jubeljaar, Bijbel en Gemeente 13, Kampen : J. H. Kok, 1977.
- Meinholt Arndt, "Jubeljahr", Theologische Realencyklopädie.
- Moon, H. Cyrus, The Year of Jubilee and the Economics of Equality, 교회와 신학 XIV, 장신대 출판부.
- Noordzij, A., Levitikus, KV, Kampen : J. H. Kok, 1940.
- Pedersen, Johs., Israel : Its Life and Culture I - II, Copenhagen : Branner og Korch, 1954.
- Van Selms, A., "Jubilee, Year of", IDB Suppl., 1976.
- Von Soden, W., Akkadisches Handwörterbuch, Wiesbaden, 1965.
- Wolf, Joh. de, Schaduwen van het Licht, Barneveld : De Vuurbaak, 1989.
- Yoder, J.H.,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972.

◆ 각 주

- 1) Grundmann, H., Jubel : FS Jost, Trier 1954, pp. 477f.; Meinhold Arndt, "Jubeljahr", TRE, p. 280.
- 2) Kutsch, E und R. North, jubel, Th WAT III, 1982, p. 556.
- 3) Hoffner, Harry A., jbl : Th WAT III, 1982, p. 391.
- 4) Van Selms, A., "Jubilee, Year of", IDB Suppl., 1976 p. 469.
- 5) R.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1, pp. 318-320.
- 6) Van Selms, A., op. cit.
- 7) Maarsingh, B., Leviticus, POT, Nijkerk : Callenbach, 1974, p. 227.
- 8) 비평가들은 이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을 각각 언약책, 성별법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이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 9)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한 책 : Kraus, F. R., Ein Edikt des K nigs Ammi-Saduqa von Babylon, Leiden 1958. 이 책이 이 칙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왕이 종종 자신의 초기 통치기간 중의 한 해에 가난한 백성들의 집단의 부채를 면제하라는 내용의 칙령을 공포한다고 한다. 왕의 칙령 둘째 단락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증서를 과기할 것을 기록했다. 물론 그것은 진흙판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 왜냐하면 왕이 그 나라를 위해 공정한 질서(misjarum)를 세웠기 때문이다.
- 10) Maarsingh, B., Maatschappijcritiek in het Oude Testament : Het Jubeljaar, Bijbel en Gemeente 13, Kampen : J. H. Kok, 1977, p. 30.
- 11) Ibid., p. 25.
- 12) Baumgartner, W.(ed.), HALAT, I, Leiden : Brill, 1967, p. 221; Von Soden, W., Akkadisches Handwörterbuch, Wiesbaden, 1965, p. 50. J. Lewy는 이 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Irisum I가 은, 금, 동, 납, 곡식, 양모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anduraram을 제정했다. Samas-nasir는 이것을 '자유의 운동'이라고 정하고 바벨론 시를 제외한 몇몇 장소에서 이를 허락했다." J. Lewy, The Biblical institution of d'ror in the Lingt of Akkadian Documents, in : Eretz Israel V, 1958, pp. 21ff.
- 13) Gordon, Cyrus H., Parallèles Nouziens aux lois et coutumes de l'Ancien Testament, RB44, 1935, pp. 38-41. "Le sujet deviendrait parfaitement intelligible si le sudutu et l'anduraru s'avéraient comme l'année sabbatique et le jubilé." 그는 자기 누이를 어떤 남자에게 노예 입양의 형식으로 넘겨준 형제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여동생을 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것은 anduraru 이후의 일이었다.
- 14) Baumgartner, B., HALAT, I, p. 398; Maarsingh, B., Leviticus, p. 230.
- 15)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창 23 : 16)을 산 것과 야곱이 세겜의 거처를 산 것(창 33 : 19)을 예외로 볼 수도 있을까?
- 16) Wolf, Joh. de, Schaduwen van het Licht, Barneveld : De Vuurbaak, 1989, pp. 74-75.
- 17) 바벨론 자료인 Esjnunna에는 곡물에 대한 최고 이자가 33%, 돈은 20%까지 나와 있

- 다. Gispen, W. H., op. cit., p. 364.
- 18)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밝혔다. 종교개혁시대에 모두가 '돈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가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되고, 사업을 위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업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 19) Hulst, A. R. en C. van Leeuwen, *Bevrijding in het Oude Testament*, Kampen : Kok, 1981, p. 53.
- 20) Noordzij, A., *Levitikus*, KV, Kampen : J. H. Kok, 1940, p. 257.
- 21) Cf. Maarsingh, B., *Maatschappij*, pp. 62-64;
Birch, Bruce C., *Let Justice Roll Down*,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p. 182.
- 22) R. 드보, op. cit., p. 320.
- 23) Jirku, A., *Das Israelitische Jobeljahr*, in : *Von Jerusalem nach Ugarit*, Graz, 1966, p. 179.
- 24) Balschheit, B. und W. Eichrodt, *Die sozial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für die Gegenwart*, Basel : Friedrich Reinhart, ND, pp. 13, 16.
- 25) Van Selms, A., op. cit., p. 497.
- 26) Gispen, W. H., *Bijbelsche archaeologie* in : *Bijbelsch Handboek*, I, Kampen : J. H. Kok, 1935, p. 290; Pedersen, Johs., *Israel : Its Life and Culture I - III*, Copenhagen : Branner og Korch, 1954, p. 84.
- 27) Van Selms, op. cit., p. 498; 앙드레 트로끄메, 예수와 비폭력 혁명, 박혜연, 박명수 공역, 서울 :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pp. 56-74; Moon, H. Cyrus, *The Year of Jubilee and the Economics of Equality*, 교회와 신학 XIV, 장신대 출판부, pp. 18, 19; Yoder, J. H.,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972, p. 39.
- 28) 대천데, 토지와 자유, 서울 : 무설, 1992, pp. 23-69; 허성구, 성서에 나타난 희년사상, 서울 :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 29) Balschheit, B. und W. Eichrodt, op. cit., pp. 26-31, 37, 38, 52-59.
- 30) Gispen, W. H., *Bijbelsche archaeologie*, pp. 290, 291; Keil, C. F.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I, translated by James Martin,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983, p. 467.
- 31) Maarsingh, B., *Maatschappijcritiek*, p. 67.
- 32) Noordzij, A., op. cit., p. 25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멀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